

3. 예산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
2012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·전용·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0건) 0원
2. 예산전용(32건) 1,317,926,000원
3. 예산이체(337건) 194,956,317,000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